기술혁신학회지 제1권제3호
1998년 12월 pp. 419-435

EU 통신시장의 규제완화 동향 및 전망 분석

A Study on Deregulation Trends and Prospect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of European Union

김방룡*, 권오성**

〈目 次〉

Ⅰ. 머 리 말
Ⅱ. EU 통신자유화 추진체계
Ⅲ. 주요 가맹국의 통신자유화 현황
Ⅳ. 향후과제 및 시사점

〈Abstract〉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European Union was fully liberalized as schedule except some member countries on and after January 1, 1998. The full liber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will provide lower charges and various services to consumers. At present, the monopoly on voice telephony services is being maintained in five member countries which authorized the implementation delay of liberalization. There are still remain many problems, such as pre-selection of carriers, number portability and interconnection, to solve by January 1, 2000. After examining the basic principle of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nd the liberalization trends of EU countries, we review the future assignments and prospects of European Union. Finally we suggest implications for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carriers in Korea.

Key Words: EU telecommunications market, full liberalization, pre-selection of carriers, number portability, interconnection.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팀장, 책임연구원 (E-mail : prkim@etri.re.kr)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팀 Post Doctor (E-mail : jhbyun@etri.re.kr)

Ⅰ. 머 리 말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은 개방을 통하여 통신시장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지난 10여년 동안 통신 시장의 자유화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EU 통신 시장이 개방일정대로 1998년 1월 1일부터 일부가맹국을 제외하고는 완전 자유화되어 EU 가맹 국내 기존 국영통신사업자들의 독점은 허물어지고, 미국의 통신회사를 포함한 신규사업자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전개되게 되었다. 유럽시장 조사단체인 유럽정보기술위원회(EITO)에 의하면 통신시장개방 원년인 1998년 EU 통신시장은 작년 대비 7.2%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중 기존 전화서비스 시장은 3%의 성장에 머물지만 이동전화 시장은 무려 20%까지 성장하고 네트워크 장비시장은 6 7%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연간 1300억달러 규모의 유럽통신시장은 통신자유화가 추진되면 2005년에는 2300억 내지 2600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통신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요금과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에 따른 요금인하는 특히 국제전화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데, 왜냐하면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친 2년동안 국제전화 접속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개방이 본격화되면 상호접속비용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폭의 갑작스런 요금인하 보다는 개방원년인 1998년의 과도기를 거쳐 1999년부터 점진적인 요금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통신시장의 자유화는 현재 15개 가맹국중 자유화 실시유예를 인정받은 5개 가맹국이 아직 음성전화서비스의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2000년 1월 1일까지 사업자 사전선택과 번호이동성을 의무화하는 문제, 상호접속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본 고에서는 EU 통신시장의 규제완화 동향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EU의 연혁과 주요조직, EU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EU 통신규제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EU의 통신자유화 추진체제를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맹국 중에서도 자유화가 비교적 진전되어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자유화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통신자유화 현황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통신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EU가 안고 있는 향후과제와 전망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의 통신정책이나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EU 통신자유화 추진체제

1. EU의 조직 및 역할

EU는 실질적으로 세개의 공동체로 분리되어 추진되어 오던 유럽공동체를 1986년 2월의 단일유럽협정(single european act)을 거쳐 1993년 11월 1일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에 의하여 명실상부한 유럽단일공동체로 발전한 것이다.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세개의 공동체(ECSC, EC, EURATOM)[1] 를 통합하여 유럽연합(EU)으로 단일화하였으며, EU는 대외정책 및 대내정책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후 1995년 1월 1일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5개 가맹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리적으로 서유럽의 거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EU는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위해 교섭중이며,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의 EU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EU의 여러 조직중에서 주요 정책결정 기관으로는 이사회(Council of the

1) 세개의 공동체는 1951년 4월 18일에 파리에서 서명되고 이듬해 7월 25일에 발효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7년 로마에서 조약이 체결되어 1958년 1월 1일에 발효된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임.

European Union), 집행 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경제 사회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유럽 법원(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등의 5개 기관이 있다.

이 사회는 세개의 공동체에 존재하던 이사회를 통합하였으며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파견된 1명의 정부대표들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가맹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 정책결정 및 입법기능이 있으며,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명령, 준칙, 결정을 발하는 권한과 유럽공동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상설 구성 국 대표 위원회(COREPER)[2] 의 위원이 되며 일반적으로 이사회 안에 있는 working group의 위원장직을 겸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EC조약의 수호자로서 EU의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규제(regulations), 지시(directions) 및 결정(decisions)의 제정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에 비하여 법적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이사회의 정책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정책제안이 있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법령이나 정책안들을 이사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도 송부한다. EU공동체의 원활한 기능수행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두 기관 사이의 협력정도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기관은 상호 종속적이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사회가 발하는 법령의 실질적인 기초작업을 수행하고 집행위원회 대표와 이사회 대표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집행위원회는 가맹국의 자유화 이행상황을 조사하여 국내법에 EU지침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가맹국에 대해 경고[3] 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EC조약 제169조(위반심사절차)와 제171조(사법재판소의 집행)에서 정한 공식적인 절차에 정식으로 소송제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조언 및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EC조약에 포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규제(Regulation) 보다 구속력이 없다. 의회의 감독기능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견책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변경 권한도 가지고 있다. 유럽의회의 권한은 초기에는 청문권에 불과하였으나, 단일유럽협정에 의하여 국제간 협력에 대한 관여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의회의 권한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이 사회와 더불어 공동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은 이 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관이라는 점에 있으며, EC조약은 이 사회나 집행위원회가 정책을 집행하거나 공동체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 반드시 경제 사회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 법원은 유럽 연합의 분쟁 해결 기구로서 유럽 법령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 법원의 역할은 EC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으며, 공동체 각 국의 법률이 EC조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 법원은 고유의 광범위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EC조약에 의하여 수여받은 재판권[4] 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

2) COREPER(Comite des Represantants Permanents)는 이사회의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비정치적인 사항에 관해 실질상의 결정을 내린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원들은 COREPER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3) 1997년 5월 기준으로 각국의 통신시장자유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자유화 지연으로, 덴마크와 독일은 상호접속조건의 비공개로 1997년 10월에 경고를 받았다.

4) EC조약으로부터 부여받은 ECJ의 재판권은 ① 공동체기관, 구성국과 기관, 구성국과 구성국 또는 구성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공동체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분쟁의 해결, ② 구성국과 개인 또는 법인, 개인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구성국 재판소의 공동체법 해석에 대한 권한 부여, ③ CFI(1989년 ECJ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최초심리법원)의 결정에서의 법령해석에 대한 청원처리 등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EU 통신자유화의 배경 및 목적

유럽은 1968년 EC관세동맹을 완성하여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가맹국내의 국내법이나 각종 규정 등 내부적 장애요인이 존재하여 역내시장은 종전처럼 분단된 채로 있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 가맹국들은 국내산업보호정책을 지속하여 분단된 시장에서의 비용을 중복시키고 설비투자를 회피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EC는 미국이나 일본의 역내진출에 대응하고 유럽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시장통합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1985년 「역내시장 통합백서」를 발표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 시장통합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서비스분야는 유럽 경제 및 산업발전에 있어 본질적인 분야로서 최우선과제로 규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전기통신은 다른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역내이익을 높이는 사회기반임과 동시에 고도정보사회를 향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전략산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통합프로그램에서 최우선분야로 위치하게 되었다.

EC는 1987년 6월에 「전기통신 서비스 및 기기에 관한 녹서」를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역내 통신산업의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EC의 통신자유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신산업은 다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인프라로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자유화와 경쟁을 통하여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의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화된 통신서비스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뒤쳐져 있던 유럽의 통신산업을 그동안 유지해온 독점체제로부터 자유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현재 EU는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이 수반되는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단계가 아니고 공동시장(Common Market)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분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비정치적인 접근으로 역내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EU는 대내적으로는 자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자로서의 EU의 위상을 높이려는데 있다.

3. EU 통신규제의 기본원칙

유럽공동체의 통신규제에 대한 기본원칙은 통신서비스와 장비의 공동시장 발전에 관한 1987년의 녹서(Green Paper)[5] 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녹서에 나타난 3가지의 기본원칙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는 EC조약 제9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독점분야의 자유화이고, 둘째는 EC조약 제100a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유럽시장의 조화이며, 셋째는 EC조약 제85조와 제86조 및 합병규칙(Merger Regulation)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경쟁규칙의 적용이다.

1) 독점분야의 자유화

독점분야의 자유화조치로 터미날 장비공급은 1988년에 자유화되었으며, 이어 1990년에 일명 Services Directives 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 부가가치 서비스, 데이터 통신, 기업 네트워크 및 특수사용자를 위한 음성, 데이터 서비스가 자유화되었다. Services Directives 는 ① Satellite Directive 94/46/EC, 1994. 10. 13(위성통신), ② Cable TV Directive 95/51/EC, 1995. 10. 18.(자유화된 통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케이블 TV 네트워크 사용에 관한 제한 철폐), ③ Mobile Communication Directive 96/2/EC, 1996 1. 16.(이동 및 개인통신), ④ Full Competition Directive 96/19/EC, 1996 3. 13.(통신 시장의 완전경쟁 이행) 등 4개의 Directive를 채택함으로써 완성되었다〈표 1참조〉. 이 중 Full Competition Directive는 통신망이 발전하지

5)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COM(87) 290, 87/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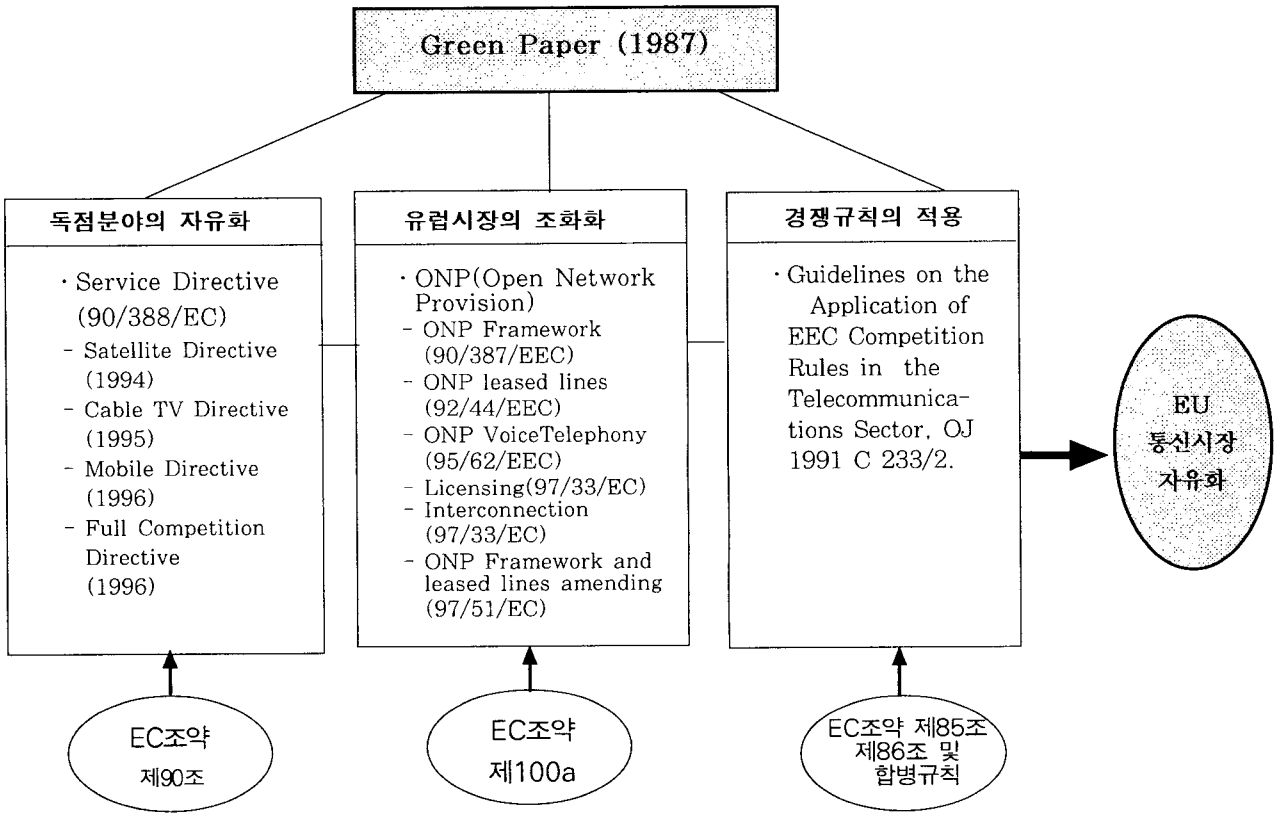

〈그림 1〉 EU 전기통신규제의 기본체제

망이 발전하지 않은 가맹국에 대해서는 최대 5년, 통신망의 규모가 작은 가맹국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완전자유화 실시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기초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브르크가 자유화 실시를 유예받았다.

2) 유럽시장의 조화

이 원칙은 소위 ONP(Open Network Provision)라고 불리우는 공중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속원칙을 기본으로 유럽 통신시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공동규제 환경 및 조화기준을 통하여 단일유럽시장을 창설하는 일련의 조건들을 정하고 있다. 1990년에 ONP Framework Directive[6] 를 채택하여 기술적 인터페이스, 요금산정 원칙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 접속규칙을 정하였으며, 이후 Framework Directive는 계속 수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국가 규제담당 기관의 독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자유화된 환경에 전용회선 및 음성전화 지침서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1992년에 전용회선의 조화로운 공급에 관한 지침서인 ONP leased lines[7] 를 채택하였고, 1995년에는 음성전화 지침서(ONP Voice Telephony)를 채택함으로써 고정 공중전화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접속 및 사용조건을 제시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요소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7년 4월에는 면허조건에 비차별성 및 투명성을 요구하고, 개인면허 허가사항을 제시한 Li

6) Council Directive of 28 June 1990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ONP, 90/387/EEC.
7) Council Directive of 5 June 1992 on the application of ONP to leased lines, 92/44/EEC.

〈표 1〉 EU의 통신 자유화에 대한 주요 지침

지침서	주요내용	최종조치 기한
Services(90/388/EC) 1990.6.28.	• 기업 네트워크 및 특수사용자 그룹에 대한 부가가치서비스, 데이터 및 음성서비스 자유공급 • 규제활동과 운영활동 구분	• 1990.12.31. • 1991.7.1.
Satellites(94/46/EC) 1994.10.13.	• 위성서비스 및 터미널 자유화	• 1995.8.
Cable TV(95/51/EC) 1995.10.18	• 자유로운 서비스공급을 위한 Cable TV망 사용 자유화	• 1996.11.1.
Mobile Communications (96/2/EC) 1996.1.16	• PSTN을 이용한 국외 직접접속 및 이동네트워크간 모든 제한 철폐 •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신의 기반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제3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	• 1996.11.15. • 1996.11.15.
Full Competition (96/19/EC) 1996.3.13.	• 음성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서 대체인프라주) 의 이용을 자유화 • 통신사업의 인허가에 관련된 법령을 위원회에 신고 • 보편적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데 필요한 국가계획을 회원국들이 결정 • 통신서비스용으로 적합한 번호의 유용성을 회원국들이 보증 • 상호접속을 위한 표준용어 및 조건, 요금 공개 • 요금재산정이 종료되었음을 회원국들이 보증 • 음성전화 및 기반구조 완전자유화	• 1996.7.1. • 1997.1.1. • 1997.1.1. • 1997.7.1. • 1997.7.1. • 1998.1.1. • 1998.1.1.

주) 대체인프라란 기존 통신사업자가 소유한 공중통신 네트워크 이외의 통신인프라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전력회사나 철도회사 등이 종래부터 소유한 업무용 통신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완전자유화지침에서는 기본음성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대체인프라의 통신사업이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신규 인프라의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censing Directive[8] 를 채택하였고, 1997년 6월에는 Interconnection Directive[9] 를 채택하여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 Significant Market Power)[10] 는 네트워크 접속과 관련한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고, 별도의 투명한 비용계산 시스템을 유지하여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월 1일까지 주요 인구집중지역에 번호이동성을 실현하고, 회원국들이 보편적 서비스의 원가를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투명한 회계분리시스템을 요구하였다.

1997년 6월에는 통신시장에 경쟁환경을 적용하기 위하여 ONP Framework Directive와 ONP leased

8)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Directive of April 1997 on a common framework for general authorization and individual license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97/33/EC

9) Directive 97/3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ne 1997 on Interconnection in telecommunications with regard to ensuring universal service and interoperability through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ONP

10) 한 국가내의 특정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2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사업자는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로 간주한다. 단, 당해 서비스의 시장규모,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규제당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 古閑 裕朗, "英國貿 易産業省(DTI), 歐州連合(EU) 相互接續指令等への對應を諮問", KDD総研 R&A 1998. 2., pp. 17-18.

lines를 수정한 ONP Framework and leased lines amending[11] 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1997년 10월에 Interconnection Directive(97/33/EU)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유럽번호계획에 관한 지침[12] 을 발표하여 2000년 1월 1일까지 사업자선택과 번호이동성의 도입을 각 가맹국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3) 경쟁규칙의 적용

집행위원회는 1987년의 녹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서[13] 에서 통신분야에 경쟁규칙을 도입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지침[14] 을 채택하였으며, 그 후 1991년에는 향후 자유화되는 정보통신시장에 EC 경쟁규칙을 완전하게 적용시키는 지침[15] 을 조약 제85조, 제86조 및 Merger Regulation 을 근거로 하여 발표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1996년에 통신네트워크 접속에 경쟁규칙을 적용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통신분야의 경쟁규칙 적용은 유럽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Ⅲ. 주요 가맹국의 통신자유화 현황

유럽연합은 통신서비스와 장비의 공동시장 발전에 관한 1987년의 녹서(Green Paper)에서 밝힌 자유화, 조화, 경쟁적용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하에 각각의 지침들을 채택하면서 역내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맹국들은 각각 자유화의 진전정도에 따라 〈표 2〉에서 처럼 3개 그룹으로 특징지어 진다.

첫 번째 그룹은 자유화 선행그룹으로 EU의 완전자유화 시행일정보다 앞서 EU지침의 국내법령화를 기한내에 처리하여 1998년 이전에 자유화를 선행한 국가들이다. 이 그룹에 속한 가맹국들이 자유화를 선행한 이유는 국내통신시장에서 부문별로 이미 경쟁이 도입되었고 통신망이 발전되어 있어서 EU자유화지침들을 기한내에 추진하기 위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과 가능한 경쟁을 조속히 실시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그룹은 자유화 시행그룹으로 EU의 완전자유화 시행일정과 때를 같이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자유화를 실시한 국가들이다. 이 그룹의 국가들은 대부분 통신망의 규모도 크고 발전되어 있어서 자유화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신통신법의 국회통과 지연 및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갈등 때문에 EU지침에 의한 자유 화일이 지연되어 EU로부터 경고를 받은 국가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자유화 유예그룹으로 EU의 완전자유화 지침(96/19/EC)에 근거하여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3년간의 자유화 실시유예를 인정받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통신망이 발전되어 있지

11) Directive 97/5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Council Directive 90/387/EEC and 92/44/EEC for the purpose of adaption to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telecommunications, 97/51/EC.

12) 상호접속지침(Interconnection Directive, 97/33/EU)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 제5항의 변경과 제12조 제6항의 삽입이다. 개정전 제1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번호이동성의 도입기한을 2003년 1월 1일까지, 주요한 인구집중지역에서 실현한다」의 내용을 「각국의 규제당국은 번호이동성을 가능한 조속히 도입하고, 2000년 1월 1일까지 최종가입자가 희망하면 특정지역 내에서 서비스사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고정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현한다」로 변경했으며, 제12조 제6항에 「각국의 규제당국은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공중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해사업자가 상호접속하고 있는 모든 공중전화통신사업자에 대한 접속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까지 가입자가 사전에 반영구적으로 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실현하도록 도모해야 한다」의 규정을 새로 삽입하였다.

13) Implementing the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 State of discussions and proposals by the Commission, COM(88) 48.

14) Commission Directive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90/388/EEC.

15)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EEC Competition Rule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OJ 1991 C 233/2.

〈표 2〉 EU가맹국의 통신자유화 그룹

구 분	자유화 선행그룹	자유화 시행그룹	자유화 유예그룹
자유화 시기	WTO 기본통신협정 발효전 (1998년 1월 1일이전)	WTO 기본통신협정 발효시 (1998년 1월 1일부터)	WTO 기본통신협정 발효후 (1998년 1월 1일이후)
국 가	· 영국 · 스웨덴 · 덴마크 · 네덜란드 · 핀랜드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룩셈부르크(1998.7.1 개방) · 스페인 (1998.12.1 개방) · 아일랜드(2000.1.1 개방) · 포르투갈(2000.1.1 개방) · 그리스(2001.1.1 개방)

않거나 통신망의 규모가 작아 경쟁환경에 적합한 통신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화가 지연되었다.

이하에서는 자유화시행그룹에 속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를 중심으로 자유화 선행그룹의 영국과 자유화 유예그룹의 스페인에 대해서 각각 자유화 추진현황을 고찰하고, 자유화 추진에 있어서의 특징 및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경쟁관계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영 국

영국은 EU가맹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선두그룹으로 정보통신 자유화를 진전시킨 국가이다. 1991년에는 종래 국내통신의 복점체제를 종식시키고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1996년에 국제재판매에 대한 상호주의를 철폐하고 설비베이스의 국제통신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여 1996년말 시점에서 이미 정보통신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였다. 그 결과 1997년 9월 현재 230개 정도의 면허가 부여되었다. 복점시대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장거리 및 국제통신사업자 Mercury는 경쟁이 전면화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최근 시내전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CATV사업자 3사와 통합하고 시내, 장거리, 국제통신 모두를 망라하는 C&W Communications로서 재도약하고 있다. C&W Communications에 통합된 CATV 3사를 제외한 기타의 CATV사업자들도 Telewest의 CATV 전화시장 진입을 계기로 CATV전화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2/4분기말 시점의 CATV전화가입수는 278만 회선이고, 주택용 시장만을 한정하면 이미 CATV전화가입자수는 주택용 가입회선의 1할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 송전회사의 자회사인 설비베이스의 장거리전화회사인 Energis와 AT&T를 필두로 다수의 재판매업자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시내전화시장에서는 WLL(Wireless Local Loop)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경쟁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영국 통신시장에서 BT의 시장점유율은 70%로 아직은 압도적이지만 3년 후에는 BT의 시장점유율이 반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CATV전화보급을 계기로 세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시내전화시장에서 경쟁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도시지역에서는 오히려 Mercury보다 CATV전화사업자가 BT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국의 CATV전화진입에 의한 시내경쟁의 활성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통신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현재 연쇄도산 위기에 처해 CATV망을 이용한 전화사업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CATV업계와 1999년 4월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신규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 그리고 기존사업자인 한국통신에게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해서 규제해왔던 영국은 최근 의회에서 통신과 방송을 일원화하는 규제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비

록 분리규제로 일단락 되었지만,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기구의 일원화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는 점과 통신·방송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영국의 제안은 향후 우리나라의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독 일

EU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통신자유화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었으며, 통신법 제정 당시 보편적 서비스문제와 DT(Deutsche Telekom)의 CATV사업 분리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1996년 7월 DT의 독점을 종식시키는 통신법(TKG)을 제정하였으며, 법에 의해 1995년 1월 1일부터 이미 주식회사화 되어있는 DT의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DT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DT의 민영화는 프랑스에 영향을 주어 지체되고 있던 FT(France Telecom) 민영화를 앞당기는데 일조를 하였다. 독일은 1997년 5월에 집행위원회로부터 DT에 의한 상호접속조건의 미공개 건으로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EU자유화 계획대로 1998년 1월 1일부터 통신시장을 완전자유화하였다. 지금까지 정보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해 온 우전부(BMPT)를 1997년 말로 해산하였고, 1998년 1월 1일부터 정보화 정책은 경제부가 담당하고, 통신규제는 경제부 산하의 새로운 규제기관인 통신감독청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DT의 강력한 경쟁자는 장거리 통신사업자인 Mannesmann Arcor.[16] o.tel.o Communications[17], Viag Interkom[18]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Mannesmann Arcor가 1998년 1월 1일부터 가장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외에도 지역과 사업범위를 한정한 약 40개사가 사업을 개시했다. 독일에서는 DT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치열한 요금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장거리요금의 경우 DT는 1분에 60베니히인데 비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Mannesmann Arcor는 1998년 1월부터 52베니히로 설정하였고, 회선임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그라인도 44베니히로 국내장거리 요금을 책정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DT는 국제·휴대전화와의 연계로 강점을 발휘하려고 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1998년 3월부터 북미용 요금을 최대 45% 인하하고, 일반전화에서 휴대전화로의 통화요금도 최대 28% 인하한다. DT의 또 다른 경쟁자인 o.tel.o Communications도 1998년 4월 1일부터 장거리와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북미나 터키같은 통화량이 많은 국가와의 국제전화 요금을 DT 보다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o.tel.o Communications는 영국에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1998년 1월말 DTI에 신청하였으며,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국가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Viag Interkom도 1998년 1/4분기내에 사업용 및 주택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반부터는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DT의 경쟁자로 부상하게 된다.

신규사업자에 대해 DT는 경쟁전략으로 국제전화, 국내장거리 그리고 고정망과 이동망간의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다양한 요금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DT는 최근 두 가지의 사업전략을 계획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막대한 설비 및 사업규모로 경쟁자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사전선택제와 번호이동성 실시 등에 높은 비

16) 독일 현지기업 Mannesmann과 Deutsche Bahn, 그리고 외자계로는 AT&T, Unisource를 주축으로 하는 그룹이다. Mannesmann Arcor는 디지털 셀룰러 사업자로서 Deutsche Bahn의 강력한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갖고 있으며, 현재 인프라 및 음성전화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17) o.tel.o Communications는 PCN 사업자인 E-Plus에 출자하여 독일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 전력회사 Veba와 RWE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으로, 현재 인프라 및 음성전화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18) 현지 전력기업인 Viag와 BT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으로 제 2 PCN 사업면허와 인프라 및 음성전화 면허를 취득하였고, PCN사업과 더불어 WLL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19) DT는 1997년에 자사 고객이 중·장거리서비스로 다른 사업자를 사전선택할 경우에는 95마르크,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타사로 바꿀 경우에는 53마르크의 비용을 청구한다고 밝혔으나, 경쟁사업자의 강력한 반발과 규제당국의 요구에 따라 1998년 1월말 사전선택제와 번호이동성 비용을 각각 42.2마르크로 설정 했다. 이는 막대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DT의 유리한 입지를 사업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용을 적용[19]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요금고지서 처리 비용을 높게 부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 다른 사업전략은 DT가 종합통신사업자로서 위치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음성전화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인터넷전화 등 통신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DT의 경쟁전략에 대응하여 자유화이후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한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장거리와 국제서비스 부문에서 요금인하를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인프라스트럭쳐를 보유한 전력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인프라면허도 취득하고 있어 통신사업에 대체인프라스트럭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통신사업자인 AT&T, Unisource, BT 등을 외자계 제휴파트너로 끌어들여 막강한 DT에 비해 신규사업자의 불리한 입지를 강화하는 경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시기인 1996년 6월 프랑스도 새로운 정보통신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근거하여 1997년 초부터 독립규제기관인 ART(Autorit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가 정보통신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1998년 1월 1일부터 통신시장이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그동안 FT가 독점해온 프랑스 전화시장에서는 FT에 대항하여 4개의 신규사업자가 공중음성전화 서비스시장에 진입하였다. 이중 FT에게 가장 유력한 경쟁자는 Cegetel[20] 이다. Cegetel은 FT에 대항하기 위해서 업무용이용자 뿐만 아니라 주택용이용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중음성전화서비스 제공시기는 WLL시내망 회선시험이 늦어져 당초 예정보다 1개월 늦어진 1998년 2월로 연기되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지역은 처음에 3대 도시권에서만 제공하다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Cegetel은 BT의 국제통신망으로의 접속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국철인 SNCF의 전국적인 광섬유망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egetel의 뒤를 잇는 FT의 경쟁상대는 9 Telecom[21] 이다. 9 Telecom의 영업개시 시기는 법인용 서비스는 1998년 상반기에, 일반소비자용 서비스는 후반기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 Cegetel이 철도회사인 SNCF와 같은 강력한 통신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9 Telecom 진영에서도 국영전력회사인 EDF(Electrinic de France) 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편 AT&T-Unisource의 100% 자회사인 Siris는 식별번호 2를, 1993년 프랑스인 기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재판매사업자인 Omnicom은 식별번호 5를 각각 부여받아 공중음성서비스 시장에 신규진입한다. Siris는 Compagnie Generale des Eaux(CGE)와 1995년 4월에 제휴를 시작했으나, 1996년 10월에 관계를 청산했다. Siris는 1998년 3월 현재 350개의 기업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200개의 기업에게는 국내전용선 서비스를, 150개 기업에게는 국내 및 국제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제전용선 서비스는 AT&T-Unisource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Siris의 공중음성서비스 개시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만, 법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Omnicom은 재판매사업자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중음성서비스는 1998년 1월부터 파리지역에서 개시하였고, 5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저렴한 장거리와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해 갈 계획이다.

프랑스는 통신자유화의 가장 큰 과제인 신통신법

20) Cegetel은 수도회사 CGE(Compagnie General des Eaux)와 철도회사 SNCF, 그리고 BT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으로 현재 아날로그 및 디지털 셀룰러, 무선호출서비스을 제공 중이고, 공중음성전화시장 진입을 위해 DECT방식의 WLL에 의한 시내망을 실험중에 있다.

21) 1997년 7월에 프랑스의 최대건설회사 Bouygues, 텔레콤 이탈리아, 독일의 Veba 가 공동설립한 고정전화회사로 「9 Telecom」의 회사명은 동회사의 사업자 식별번호 9번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Bouygues, 텔레콤 이탈리아, 독일의 Veba는 휴대전화사업자인 「Bouygues Telecom」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9 Telecom」과 「Bouygues Telecom」의 통합계획은 없다.

제정과 FT의 민영화에 난관을 겪었다. 신통신법 제정시 논란이 대상이 되었던 것은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문제였다. 지금까지 FT의 사명으로 되어있던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경쟁사업자에게 개방한다는 것에 대해 FT가 품질유지 및 비용관리의 이유로 반대하자, 결국 FT를 제공사업자로 규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FT의 민영화도 노조의 파업과 반복된 저항으로 지체되었으나, DT 민영화의 영향과 정부의 강력한 자유화 의지로 민영화법을 가결했다.

프랑스의 공중음성서비스의 자유화에 따라 신규진입하는 FT의 경쟁자는 전력이나 철도 등의 대체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서비스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업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FT를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

1995년 EU에 가맹한 오스트리아는 전년도인 1994년부터 다른 가맹국을 추격하기 위하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빠른 속도로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1997년 5월 시점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의 공중음성전화 서비스의 자유화를 정한 개정통신법(TKG 1997)이 아직 의회에서 심의중이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오스트리아자유화 지연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동 법이 1997년 6월말에 성립되었고, EU의 자유화 관련지침은 거의 도입되었다. 개정통신법에는 면허, 보편적 서비스, 번호계획, 분쟁조정절차, 규제당국 등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인가 면에서 설비베이스의 공중이동통신 및 공중음성전화 서비스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그 외 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의 통신시장에는 스위스콤을 비롯 10여社가 1998년 이후에 진입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통신규제와 관련된 기관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통신행정의 최고기관은 연방과학운수성으로, 그 아래에 지방별로 통신행정을 관할하는 4개의 통신국과 무선시스템과 통신단말기기의 인가를 관장하는 인가국이 있다. 또 이들 행정기관과는 별도로 비영리의 전기통신관리 유한공사가 설립되어 있어서 규제당국으로서 사업면허의 부여, 번호할당 등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그 이외에도 따로 연방정부가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신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호접속에 관련된 분쟁 조정과 보편적 서비스비용의 분담금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음성전화서비스 이외의 VAN, 데이터통신, 기업통신 등의 분야는 이미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음성전화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대체인프라의 신규구축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편적 서비스의 부담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EU로 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통신·방송규제 당국의 설립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심의가

〈표 3〉 오스트리아의 EU지침 이행상황

서 비 스	자 유 화 시 기		비 고
	EU지침 기한	오스트리아	
통신단말기기	1988	1994. 4. 1	• 1994년 통신법 (TKG)에 기초
데이터 통신	1990	1994. 4. 1	
VAN 서비스	1990	1994. 4. 1	
위성통신	1994	1994. 4. 1	
이동체통신	1996. 1. 16	1995	
CATV망의 통신이용	1996. 10. 18	1996. 1. 1	
대체인프라 이용	1997. 7. 1	1997. 7. 1	• 음성전화서비스 이외
고정공중망	1998. 1. 1	1998. 1. 1	• 1997년 통신법 (TKG)에 기초
음성전화서비스	1998. 1. 1	1998. 1. 1	

자료 : 近藤 麻美, "EU通信市場完全自由化目前狀況", KDD總研 R&A 1997. 12, p.50.

오랜 난항끝에 1997년 7월 31일에 겨우 타결되었다. 새로운 통신법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신관련 규제를 해온 우전부(the Post and Telecommunications Ministry)는 커뮤니케이션부로 개편되고, 새로운 규제기관으로 통신과 방송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일명 Autorit라는 통신보호규제기관(the Authority for Protection of Communications)이 창설되었다. 규제기관은 주파수의 인가 및 사업면허 부여, 상호접속 규정의 제정과 조정,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지정 및 규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음성전화시장에 신규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Olivetti그룹의 Infostlata[22] 와 Mediaset와 BT 등이 이끄는 Albacom이다. 또한 1997년 11월말에 전력회사 ENEL과 DT, FT가 설립한 합병회사 Wind도 신규진입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현재 Telecom Italia의 자회사인 TIM과 Olivetti 그룹의 Omnitel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97년 4월에 제3이동체면허(DCS-1800)입찰의 실시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후 일정이 대폭 지체되었다. 이 면허에는 Mediaset, BT, 텔레노르 등에 의한 콘소시움 Picienne와 상술한 Wind가 입찰을 계획하고 있는데, 입찰결과의 발표는 1998년 하반기까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자유화이후 새로운 규제기관으로 통신과 방송을 통합하여 규제하는 일원화된 규제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는 통신·방송의 융합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는 현상에 대비한 것이며, 앞서 언급한 영국의 의회제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규제기관 설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벨기에

벨기에는 1997년 5월 30일까지 집행위원회에 자유화법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7년 6월 집행위원회로부터 경쟁법 채택을 가속화하라는 첫 번째의 공식경고를 받았다. 그 후에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7년 10월에는 자유화기한까지 경쟁법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하에 두 번째의 경고를 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벨기에는 유럽위원회로부터 많은 경고를 받았다.

1997년 11월에 BIPT(Belgian Institute for Post and Telecommunications)는 완전자유화 법안을 최종적으로 벨기에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는 보편적 서비스 비용, 번호이동성, 주파수 할당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음성전화시장에서는 Belgacom과 경쟁하게 될 신규사업자들이 BIPT로부터 임시면허를 획득하였는데, 이들 면허의 효력은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BIPT는 최소한 1998년 4월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정식면허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사업자 중의 하나인 Telenet은 US West, 21 Flemish CATV 그리고 4개의 Benelux 은행이 1996년 6월에 합작설립한 회사로서 이미 데이터통신 등의 분야에 진입한 CATV사업자이다. Telenet은 1998년 1월에 면허를 부여받아 현재 Motorola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신의 CATV망에 음성을 전송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1998년 2월부터 Antwerp와 Mechelen에서 시험서비스를 시작했으며, 4년안에 Flanders 전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Worldcom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 CATV사업자인 Coditel도 1998년 1월에 BIPT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였으며, 1998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Worldcom의 전유럽 광섬유망을 이용하여 London, Paris, Amsterdam 그리고 Brussel을 연결시킬 계획이다.

1998년 3월초에는 BT, Esprit, Mobistar가 BIPT로부터 공중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2) 기기제조업체인 Olivetti, Bell Atlantic, FT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철도회사 FS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대주주 Olivetti는 독일의 신규사업자인 Mannesmann과 합병회사를 설립할 것을 발표하여 Infostlata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파트너와의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벨기에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경고사항

- 음성전화 서비스 및 공중망의 제공/부설의 자유화에 필요한 법적조치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EU지침에 의하면 가맹국은 이들 조치를 1997년 1월 1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 음성전화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대체인프라의 이용은 인정하지만, 신규 인프라구축이 아직 자유화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미 1996년 8월에 이 건에 관해 벨기에에 시정을 요구했다.
- 보편적 서비스의 비용분담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다른 가맹국의 통신네트워크와의 상호접속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 벨가콤에 의한 상호접속료 산정근거가 불명료하다.
- 벨가콤의 요금 재조정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주)]

주) 종래, 기존사업자의 통신요금은 시내통화부문의 적자를 장거리부문의 수입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완전자유화지침속에서는 각 가맹국은 1998년 1월 1일까지, 기존사업자의 통신요금을 실제비용에 기초한 요금으로 개정하는 요금 재조정을 완료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급격한 요금 재조정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한까지 요금재조정을 완료하지 못할 가맹국은 상세한 일정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면허를 부여받아 Belgacom의 경쟁자는 더욱 늘어났다. BT는 아직 Belgacom과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식별번호 1555를 사용하여 주택용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용고객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의 재판매사업자인 Esprit도 Belgacom과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고 식별번호 1680을 할당받아 1998년 3월 1일부터 Closed-user 그룹에게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벨기에의 6개 도시를 연결하는 자신의 광섬유망을 구축하고 있고, 1998년 3/4분기에는 전국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FT가 57%의 지분을 소유한 벨기에의 이동통신사업자인 Mobistar는 1998년 후반기부터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벨기에는 신규사업자에게 자유화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특이하게 임시면허를 부여하여 Belgacom과의 경쟁을 유도했다. 이러한 이유는 이탈리아는 EU의 자유화일정에 맞춰 1998년 1월 1일부터 완전자유화를 실시하기로 약속된 국가였으나, 신통신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EU로부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까지 받게 되자 자유화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임시면허를 부여한 것이다.

7. 스페인

스페인도 벨기에와 같이 대체인프라의 자유화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개선을 보이지 않아 유럽위원회는 법적조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은 자유화 유예그룹중의 하나로 완전자유화와 관련하여 1998년 11월 30일까지 11개월의 유예기간를 인정받고 있다. 그때까지 기존사업자인 Telefonica와 제2사업자로서 면허를 부여받은 CATV사업자인 Retevision에 의해 복점시장이 유지된다. 그러나 Retevision도 주식의 40%를 스페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Telefonica와 Retevision에 의한 복점체제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Retevision은 제2사업자로서 음성전화의 면허를 부여받고, 사업자식별번호도 050으로 결정해 1998년 초기에 스페인 국내의 주요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Retevision은 1997년 7월 전략적제휴의 동반자로서 Telecom Italia를 선택했다. 그 당시 Retevision의 제휴파트너로서 Telecom Italia 진영에 패한 FT는 스페인의 CATV회사인 Cableuropa 와 함께 제 3사업자의 면허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의 지역 전력회사들도 통신산업으로의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첫 번째 사업권을 획득한 Telefonica의 자회사인 Telefonica Moviles와 두 번째 사업권을 취득한 Airtel[23] 이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사업자간의 경쟁결과 스페인의 이동전화요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1998년 6월경에는 새로 DCS-1800면허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EU가맹국의 자유화 추진현황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를 들면, 사전선택제 및 번호이동성 문제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응용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호접속 조정 문제, EU전체를 총괄하는 단일규제기관 문제 등이 남아있다.

한편 EU의 통신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서비스 기기 자유화 → 부가통신 및 데이터통신 자유화 → CATV망 자유화 → 이동통신 자유화 → 대체인프라 자유화 → 음성전화 자유화의 순으로 단계적인 통신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이 결과 1998년 1월 1일 출

〈표 5〉 EU 주요 가맹국별 자유화 동향 비교

내용 / 국가	국가규제 기관(NRA)	자유화 이행시기[주1]	지배적사업자의 주요 신규경쟁사업자(음성)	대체 인프라[주2]	특 징
영 국	Oftel	BW	· C&W, Telewest(CATV), Energis	· EWR · CATV	· EU중 가장 빠른 자유화 시행 · 시내경쟁 가장 치열 · EU의 사전선택제(equal access) 반대 입장
독 일	통신감독청	W	· Mannesmann Arcor, o.tel.o Communications, Viag Interkom	· EWR	· EU중 가장 큰 규모의 통신시장 · DT와 신규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치열
프 랑 스	ART	W	· Cegetel, 9 Telecom, Siris, Omnicom	· EWR	
오스트리아	• 통신관리위원회(정부기관) • 전기통신관리유한공사(비 영리기관)	W	· 스위스함을 비롯 10여社가 진입의향을 표시		· 통신규제와 관련된 기관이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음.
이탈리아	통신보호규제 기관(Autorit)	W	· Albacom, Infostlata, Wind	· EWR	· 통신과 방송을 통합하여 규제하는 독립된 규제기관
벨 기 에	BIPT(정부 기관)	W	· Telenet, Coditel, BT, Esprit, Mobistar	· CATV	· 가맹국중 EU위원회로 부터 가장 많은 경고를 받음 · 법안이 통과될 때(예정:1998년 4월 이후)까지 임시면허가 부여되었음
스 페 인	우전총국 (정부기관)	AW (1998.12.1)	· Retevision	· CATV	· Telefonica, Retevision에 의한 복점상태

Ⅳ. 향후 과제 및 시사점

EU 통신시장은 WTO기본통신협정의 발효시기인 1998년 1월 1일을 기해서 완전자유화를 단행하였다. 통신시장의 자유화는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시켜 EU의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課題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범한 EU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 체제는 세계통신시장에서 유럽의 위상을 높여 세계 각국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완화정책의 향후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EU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우리나라의 통신정책 및 통신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3) Airtel은 BT, BCH, Banco, de Santander와 Endesa가 컨소시움을 구성한 것으로, 1994년 12월에 GSM 사업권을 획득하고 1995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Airtel은 전체 GSM시장에서 4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방안 수립

EU의 통신자유화에 따라 가맹국내에서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사업자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각각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BT, DT, FT 등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종합통신사업자로서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들은 특히 요금전략과 대체인프라스트럭쳐 보유사업자 또는 외국사업자와의 제휴전략을 통해서 기존사업자를 공략하고 있다. 장거리나 국제전화 서비스에서 신규진입과 경쟁이 더욱 치열하며, 이른바 틈새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재판매서비스를 통한 음성전화로의 신규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들도 가속화되고 있는 외국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BT, DT, FT 등의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역내통신시장이 자유화 되면서 합작이나 제휴를 통한 외국시장의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 사업자들도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을 국내시장의 방어에만 국한하지 말고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진출은 우리나라 통신사업자가 진출해 있는 남미나 아시아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지역은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서 진입의 폭이 넓지만, 아직은 경쟁력 부족으로 단독투자보다는 전략적 제휴나 지분투자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영국, 독일 등이 자국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지원 내지는 지급보증, 투자에 따른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 등의 가시적인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내통신사업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에 대응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자유화 및 개방화 정도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서비스와 기기부문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나, 대체인프라스터럭쳐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EU보다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CATV망 뿐만 아니라 전력,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의 공익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체인프라스터럭쳐를 이용한 통신사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이들 대체인프라스터럭쳐 보유사업자를 주축으로 한 음성전화사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CATV전화 진입에 따라 시내전화 부문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가통신설비의 직접적인 전화사업에의 이용이 아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대체인프라스터럭쳐의 전화사업에의 활용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통신정책적인 측면과 통신사업자측면에서의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연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CATV업계는 CATV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CATV망을 이용한 전화사업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전력이나 도로공사는 자가통신설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요구[24] 하고 있다. 이들이 통신사업 허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광전송망의 성능이 우수하여 국가 초고속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의 융합과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으며, 개방된 통신시장에서 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당국도 WTO 기본통신협정 발효에 따른 통신시장의 개방, 통신설비에 대한 중복투자의 방지 및 국가 정보통신자원의 총체적인 활용 차원에서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통신정책 측면에서 통신당국은 대체인프라스트럭쳐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사업

24) 현재 한국전력이나 도로공사는 기간통신분야는 10%미만의 지분, 부가통신분야는 100%까지 지분이나 자회사를 통해서 통신사업에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자가보유통신설비의 1/2까지만 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신사업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자 측면에서 기존 통신사업자와 자가통신설비 보유사업국자는 상호간에 경쟁 및 협력관계의 구도하에 외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정부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

자유화의 진전 속도가 빠른 가맹국들은 대부분 독립된 규제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유화가 지체되고 있는 가맹국들은 정부기관이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EU가맹국 중, WTO협정 발효전에 자유화된 6개 국가 중에서 벨기에의 BIPT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통신정책과 규제를 함께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독립된 통신규제기관 설립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탈리아에서는 통신과 방송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하였고,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의회에서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여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기관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유보되었지만 통신·방송의 융합화에 대비하여 통신과 방송부문을 총괄하는 새로운 규제기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었고, 통신·방송의 융합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의 통신·방송을 통합하는 규제기관의 설립이나 영국의 의회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도 규제기관이 정부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운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정보통신부산하에 있는 통신위원회가 정부기관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규제기관이 되는 경우, 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어 사업자율성은 커지겠지만, 보다 엄격하고 경쟁중립적인 사후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향후 EU 통신시장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비

분석 결과, 최근 및 향후 EU 통신시장의 규제완화 일정과 내용은 〈표 6〉과 같이 요약된다.

위와 같은 EU의 통신시장 규제완화 일정은 우리나라의 통신정책과 통신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몇

〈표 6〉 EU의 규제완화 일정 계획

구 분	97. 6.	97.10.	97.12.	98.2	98.6.	98.12.	99.12
사전선택 및 번호이동성 의무화		2000년 1월 1일까지 통신사업자들에게 사전선택제와 번호이동성을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공식 지침 발표(현저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고정 공중네트워크 사업자만 대상)				이동통신에 대한 번호이동성과 사업자 사전선택제 도입확대에 대한 검토 완료	시장지배력이 낮은 고정 공중네트워크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완료
상호접속 요금제도 표준화	상호접속 관련 ONP 지령을 최종 채택 (상호접속요금은 원가에 기초하여 설정할 것을 규정)	상호접속요금 설정 가이드라인으로 상호접속요금에 관한 권고를 공표					상호접속요금 설정을 위한 동일한 원가회계방식 설정
통신·방송융합서비스규제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관한 Green Paper 발표		EU위원회에서 5개월간의 공청회를 거친 결과를 공표	행동계획 마련	
인터넷 서비스 규제				인터넷헌장 제정·제창		통신장관 회의를 개최, 인터넷 공동규제에 관한 최종안을 1999년 중에 제출할 계획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EU 통신시장에서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사전선택제 및 번호이동성 실시, 상호접속 관련제도 및 요금설정, 인터넷 및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등의 규제에 관한 정책결정은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에 벤치마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당국은 EU 통신시장의 규제완화 일정 및 내용에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통신사업자들은 EU 통신시장의 규제완화 내용이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하여 사업전략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EU 통신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EU 통신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에 성공하기 위하여 이미 규제완화된 사항뿐만 아니라 미해결된 규제완화 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김병근, "유럽연합의 정보통신정책", KISDI, 「정보통신정책」 제8권 8호, 1996. 5. 2, pp.1-26.

정신량, "1998년 주요국의 정보통신 전망",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0권 1호, 1998. 1.16, pp. 13-18.

전자신문, 1998. 3. 7.

田口英一譯, "EUにおける電氣通信規制パッケージの實施狀況", 「海外電氣通信」, 1997. 9, pp.5-11.

近藤 麻美, "歐州委員會, 番號計劃に係わる指令案を提出", 「KDD總研 R&A」, 1997. 11, pp.40-45.

_____, "EU通信市場完全自由化目前狀況", 「KDD總研 R&A」, 1997. 12, pp.44-50.

_____, "フランス競爭事業者の動向" 「KDD總研 R&A」, 1998. 1, pp.52-54.

_____, "歐州委員會, インターネット憲章の制定を提唱", 「KDD總研 R&A」, 1998. 3, pp.38-39.

安道 幸一郎, "世界のテレコム展望", 「KDD總研 R&A」, 1998. 1, pp.3-6.

古閑 裕朗, "英國貿易産業省(DTI), 歐州連合(EU) 相互接續指令等への對應を諮問", 「KDD總研 R&A」, 1998. 2, pp.12-30.

日本經濟新聞, 1998. 1. 1. 5面.

電波新聞, 1998. 1. 1. 4面.

Alice Macandrew, "Belgium finally prepares for full telecommunications Liberalisation," *Telecom Markets*, Issue No.326, November 6, 1997, pp.3-4.

_____, "France Telecom to get free ride at the start of liberalisation," *Telecom Market*, Issue No.328, December 4, 1997, pp.1-11.

David Cullen, "Belgium licenses new competitors including BT," *Telecom Market*, Issue No.334, March 12, 1998, pp.5-6.

John Worthy and Rohan Kariyawasam, "A pan-European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22, No.1, 1998, pp.1-7.

Richard Handford, "German Carrier o.tel.o makes first move into UK market," *Telecom Markets*, Issue No. 332, February 12, 1998.

Telecommunications Reports, Vol.63, No.49, December 8, 1997, p.22.